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대상을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함(안 제37조).
- 상습채불사업주의 임금등 채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을 위하여 임금등 채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4 및 제43조의6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명단공개 채불사업주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43조의7 신설).
-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채불하거나, 1년간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법원에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8 신설).
-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60조제6항).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100일을 주도록 하고,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

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함(안 제74조제1항 및 제7항).

-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2조의2 신설).
- 명단공표 체불사업주가 명단공표 기간 중 임금체불 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

II. 검토의견

안 제43조의4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등을 규정하면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요건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3개월분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사항에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음.

안 제43조의6제1항제4호는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 등에 “체불사업주”의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월평균보수는 체불사업주가 아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자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음.

안 제43조의8은 근로자가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안 부칙에 적용례를 두지 않고 있는데, 이처럼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 법 시행 이후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주가 위반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음.

추가적으로, 안 제43조의7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은 제4조 제3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¹⁾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는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이 공개

1)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된 체불사업주 중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제1항제1호) 사람 등에 대해서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인 것으로 보임. 참고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의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²⁾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법무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 법률이 대응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안 제43조의7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법 시행 전 「출입국관리법령」의 개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법무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안 제109조와 관련하여, 명단공개 체불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므로 형사상 소추여건을 장관이 정하게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입법과 형식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의 도급사업 임금지급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44조),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업에서 임금지급 연대책임위반(「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경우도 반의사불벌죄 배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하수급인 근로자들의 임금 등 지급 책임자를 확장하여 하수급인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의 신속한 회복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보완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함.

그 밖에 경미한 자구수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람.

(전문위원 이 화 실)